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33
----------	-------

발의연월일 : 2026. 9. 11.

발 의 자 : 조정훈 · 최수진 · 서천호
윤용근 · 박충권 · 김미애
김용태 · 정동만 · 이소희
권영세 · 서명옥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별도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정치중립적이고 이해충돌이 없어야 하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위원장의 업무수행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인사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위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592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5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
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청문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후단 신설>	② ----- ----- ----- ----- ----- ----- -----, <u>이 경우 위원장은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u>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